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45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윤상현 · 곽규택 · 이현승
최보운 · 김선교 · 고동진
조지연 · 임종득 · 김 건
박수민 · 주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 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

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라. 그 밖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2.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하여 필

요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u>가.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u> <u>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u> <u>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u> <u>라. 그 밖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 의료서비스 이</u>

	<u>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u> <u>2.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 의료기관 재취업 지원</u> <u>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 기준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